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24일, 윤건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0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의원)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강명구)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명칭을 ‘시·도지사협의체’로 명확히 하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명칭을 ‘시·도지사 협의체’로 명확히 하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부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협업체가”를 “시·도지사 협업체가”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소방공무원 보 건안전 및 복지 정 책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소방 청 차장이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 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 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소방공무원 보 건안전 및 복지 정 책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1. ----- ----- ----- ----- -. 이 경우 「지 방자치법」 제182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 체가 추천하는 사	제9조(소방공무원 보 건안전 및 복지 정 책심의위원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 ----- 1. ----- ----- ----- ----- -. ----- ----- ----- ----- -----시·도 지사 협의체가---

2.3. (생략) ④ ~ ⑨ (생략)	<u>람을 포함한다.</u> 2.3.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2.3. (개정안과 같음) ④ ~ ⑨ (개정안과 같음)
------------------------------------	---	--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후단 신설> 2. 3. (생 략) ④ ~ ⑨ (생 략)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 -----. 이 경우 「지방 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